

주 관 국(과)	시 설 명	비 고
보건복지관 (장애인복지과)	○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○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○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○시립상이군경복지관 관리운영 ○시립맹인복지회관 관리운영 ○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 관리운영 ○시립곰두리체육센터 관리운영 ○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 관리운영	
보건복지국 (청소년과)	○시립소년의집 관리운영 ○시립동부아동상담소 관리운영 ○시립수서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 ○시립목동청소년회관 관리운영 ○시립문래청소년회관 관리운영 ○시립보라매청소년회관 관리운영 ○시립서울청소년회관 관리운영 ○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○시립구로지역청소년복지관 관리운영 ○시립근로청소년종합복지관 관리운영	
산업경제국 (산업정책과)	○서울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	
산업경제국 (중소기업과)	○서울애니메이션지원센터 관리운영 ○잠실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관리운영 ○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관리운영 ○창동중소기업제품전시장 관리운영	
산업경제국 (고용안정과)	○시립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관리운영 ○시립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관리운영 ○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 관리운영 ○시립엘림직업전문학교 관리운영 ○시립남부근로복지관 관리운영 ○시립노동복지관 관리운영	
문화관광국 (문화재과)	○서울놀이마당 관리운영	

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조례
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
번호 149

1998.12
기획경제위원회

1. 심사결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
1998년 11월 18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

1998년 11월 20일

다. 상정일자

제16회 정기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
(1998년 12월 18일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
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: 산업경제국장 신동우)

- 가. 제안이유
농촌지도자에 대한 영농자금융자 등 농촌

지도자 육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 지원하여 왔으나 운용금액이 소액이고 서울시 재정체계의 단순화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·지원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조례폐지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규: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
- ※ 제133조(재산 및 기금의 설치) ①(생략)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③(생략)

□ 예산조치: '99예산에 반영 예정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동수)

○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'92. 10. 23. 설치조례를 제정·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서울시에서 총 5억원을 출연하여 47농가에 4억 7,000만원(평균 1농가당 1천만원)을 융자하였고, 융자조건은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이며, 대출금리는 연리 5%로서 '98. 10. 월말 현재 평가잔액은 2억 2,700만원이고 예금이자 1,26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.

○ 동 기금은 운용금액이 소액이고 서울시 재정체계의 단순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·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조례 폐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, 기금잔액(예금이자 포함)과 융자금 상환액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.

○ 그러나 일면 기금조례가 폐지되면 일반회계로의 예산편성 여부에 따라 당초 기금설치 목적인 도시형 농업발전을 주도할 영농주 양성과 개방화에 대응한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기술 보급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중단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

참고사항으로 소관부서에서는 2억 6,000만원(농촌지도자 영농자금융자 2억원, 농촌지도자 국·내외 연수 및 교육행정지원 6,000만원)을 '99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.

4. 질의·답변: 생략

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적의원 12명, 출석의원 7명 전원일치)

6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융자금에 대한 경과조치)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일까지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관리한다.

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수도요금의 적용시기)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은 1999년 3월 남기분부터 적용한다. 다만, 격월검침하는 3월 남기분의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사용기간의 1/2에 해당하는 구경별 기본요금과 사용량의 1/2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적용하고,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기간의 1/2에 해당하는 구경별 기본요금과 사용량의 1/2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적용한다.

(다음 페이지에서 계속)